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지방분권 추진에 대응한 농지관리사무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관련 해외조사출장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10. 8.

출장자 : 연구위원 김 홍 상 (인)

붙임 : 조사결과보고 1부 끝

조 사 결 과 보 고

1. 조사지역, 출장자, 출장기간

조사지역	출 장 자	출 장 기 간
일 본	김 홍 상	2010. 7. 4 - 7. 9 (5박6일)

2. 출장목적 :

- 농지 관련 일본 법정수탁사무 및 위임업무 운용 실태 조사
 - ※ 일본은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으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국가 또는 상급단체가 본래 수행할 역할이지만,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 전환함.
- 농업용수 및 농업수리시설 관리 관련 기관 조사 동시 수행

3. 조사대상 기관 및 면담자

- 農林水産省 農村振興局 農村政策部 農村計劃課
 - 企劃官 對馬靜雄, 課長補佐(農地轉用班) 佐藤一昭 등 3인 면담
- 農林水産省 經營局 構造改善課
 - 總務係長 武部直也 면담
- 農林水産省 農村振興局 整備部 水資源課
 - 課長補佐(水資源企劃班) 都築慶剛, 課長補佐(施設保全管理室) 秋田憲司, 水利調査係長 山上一久 등 4인 면담
- 農林水産省 農林水産政策研究所
 - 主任研究官 樋口倫生 면담
- 國土交通省 河川局 水政課
 - 水利審査係長 箭内康治 등 2인 면담
- 埼玉縣 農林部 農業政策課
 - 農村計劃・農地調整擔當 主幹 黑澤史明, 主幹 戸井田幸夫, 實務者 菊地功, 廣澤邦美 등 4인 면담
- 埼玉縣 埼玉市 農業委員會
 - 事務局 農地調整課長 厚澤啓二, 課長補佐 小林榮一 등 5인 면담
- 埼玉縣 미누마(見沼)지역과 미나미(南)지역 수리시설 및 대규모 농지전용 지구 및 도시 근교 농지이용 현황 현장 방문
- 埼玉大學

- 禹宗杭 教授 면담
- 群馬縣 農政部 農村整備課
 - 課長 若田部滿, 課長補佐(企劃係長) 女屋一之, 課長補佐(施設保全係長) 石澤隆之, 主幹 渡邊玲, 副主幹 日景玲, 次長 村上行正 등 7인 면담
- 群馬用水土地改良區
 - 事務局次長 武藤育雄, 管理・業務總括總務課長 植木秀郎, 總務グループ總務課長 加藤明海, 管理課長 山口岩男, 賦課調整課長 細野郁夫, 營農專門技術員 折原健司 등 8인 면담
- 獨立行政法人 水資源機構 群馬用水管理所
 - 所長 細山田眞, 所長代理 舟生義廣 등 2인 면담

4. 주요 조사 내용

가. 농지 관련 일본 법정수탁사무 및 위임업무 운용 실태 조사

- 일본은 1998년 『지방분권추진계획』(각료회의 자료)을 발표하고,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 제정 및 2000년 4월 시행으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국가 또는 상급단체가 본래 수행할 역할이지만,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국가사무 등으로 재편함.
 - 법정수탁사무는 반드시 법에 명시하여야 함.
 - 농지관리 관련 사무 중 법정수탁사무로 전환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별표(별표 제1 제1호법정수탁사무(제2조관계), 별표 제2 제2호법정수탁사무(제2조관계))로 명시하고 있으며,
 - 그 구체적 내용을 개별법인 농지법 제63조(제1항 제1호법정수탁사무, 제2항 제2호법정수탁사무)에 명시됨. 구체적 내용 <별첨 1> 자료.
- 법정수탁사무는 1호 법정수탁사무와 2호 법정수탁사무로 구분됨. 1호 법정수탁사무는 국가사무를 도도부현, 시정촌 및 특별구가 처리하는 경우를, 2호 법정수탁사무는 도도부현의 사무를 시정촌 및 특별구가 처리하는 경우를 법으로 정하고 있음.
 - 1호 법정수탁사무 :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도도부현, 시정촌 또는 특별구가 처리하는 사무 중에서 국가가 본래 행하여야만 하는 역할과 관계하는 것으로, 국가에 있어서 그 적정한 처리를 특히 확보할 필요로 인하여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이 정하고 있는 것
 - 2호 법정수탁사무 :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의해 시정촌 또는 특별구가 처리하는 사무 중에서 도도부현이 본래 행하여야만 하는 역할에 관계하는 것으로, 도도부현

에 있어서 그 적정한 처리를 특히 확보할 필요로 인하여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이 정하고 있는 것

○ 법정수탁사무로 지정된 내용을 보면,

- 우선 <제1호 법정수탁사무 내용>과 관련하여 ① 농지의 권리이동 관련 시정촌장의 의견 제시, ② 4ha 미만 농지의 전용에 대한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 ③ 농지전용을 위한 권리 이동 관련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 ④ 농지이용상황조사, 농지이용증진 도모 필요 농지와 유휴농지 관리 등 관련 시정촌의 사무, ⑤ 유휴농지에 대한 지장의 제거 등의 조치 명령 관련 시정촌의 사무, ⑥ 농지 매수 및 처분 관련 입회조사, 보고 요청 등 관련 도도부현의 사무, ⑦ 농지전용 위반에 대한 처분 관련 도도부현의 사무, ⑧ 농지 정보 제공 관련 시정촌의 사무 등이 있으며,
- <제2호 법정수탁사무 내용>으로는 ① 시가화구역내에서 2ha 미만의 농지의 신고 전용과 관련된 시정촌의 사무, ② 시가화구역내에서 신고 전용과 관련 권리 이동 제한과 관련된 시정촌의 사무 등이 있음.

○ 일본의 농지 관련 법정수탁사무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현장 확인 업무와 일부 농지전용 업무임.

- 농지 정책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 중 법정수탁사무로 분류된 것은 기본적으로 도도부현지사 허가 사항인 2~4ha의 농지전용허가 사무와 이미 시가화구역내에서 2ha미만 농지의 신고 전용 관련 시정촌의 업무임(시정촌에서 대개 농업위원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음).

<제1호 법정수탁사무 내용>

- 제 3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다)
※ 제3조 내용 :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권리이동의 제한
- 제4조 제1항, 제3항(동조 제 6항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동일한 사업의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 2헥타르를 초과한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한 행위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 ※ 제4조 내용 : 농지 전용의 제한
-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 및 동조 제 3항 및 제 5항에 있어 준용한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동일한 사업의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 2헥타를 초과한 농지 또는 그 농지와 아울러 채초방목 지위에 앓고 제3조 제1항 본문에 언급한 권리를 취득한 행위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 ※ 제5조 내용 :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전용을 위한 권리 이동의 제한

- 제30조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34조 및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 ※ 제30조의 내용 : 이용상황조사 및 지도 ※ 제31조의 내용 : 농업위원회에 대한 신청 ※ 제32조의 내용 : 유휴농지임을 알리는 통지 ※ 제33조의 내용 : 유휴농지의 농업상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신고 ※ 제34조의 내용 : 권고 ※ 제35조의 내용 : 소유권 이전 등의 협의
-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 ※ 제44조의 내용 : 조치명령
- 제49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제2호, 제3호 및 다음 호에 언급한 사무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 제49조의 내용 : 입회조사 ※ 제50조의 내용 : 보고의 징구
-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제 2호 및 제 3호에 언급한 사무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 제51조의 내용 : 위반전용에 대한 처분
-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 ※ 제52조의 내용 : 정보의 제공 등

<제2호 법정수탁사무 내용>

- 1 제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 (동일한 사업의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 2헥타를 초과한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한 행위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 ※ 제4조의 내용 : 농지전용의 제한
- 2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동일한 사업의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 2헥타르를 초과한 농지 또는 그 농지와 아울러 채초방목지에 관하여 제 3조 제 1항 본문에 언급한 권리를 취득한 행위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 ※ 제5조의 내용 :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전용을 위한 권리이동의 제한 ※ 제3조의 내용 :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권리이동의 제한

○ 일본에서 2000년 법정수탁사무로 전환한 것의 핵심은 농지전용 업무인데, 법정수탁사무 개념의 도입으로 별도의 농지전용 관련 실질적 기관위임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

- 농지전용에 대한 심사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법정수탁사무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에 1998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추진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짐.
- 즉 1998년 지방분권 추진 및 행정사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에 관하여 농림수산성 대신의 권한이었던 2ha 이상 농지전용허가 권한 중 2~4ha에 대해서는 지사(도도부현)에게 기관위임한 바 있음.

- 1998년에 이미 기관 위임된 2~4ha에 대한 지사(도도부현)의 농지전용 업무가 2000년 법정수탁사무로 지정된 것에 불과함.
- 농업진흥지역(실질적으로 농용지)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기본적으로 지사(도도부현)가 지니고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목표 개념이 설정되고 농림수산성 대신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이양 변천 과정

- 2ha를 초과하는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2ha 미만에는 대해서는 도도부현지사 허가로 기관 위임), 1991년 2ha를 초과하는 농지전용에 대해서도 農工法(농촌지역공업등도입촉진법) 등의 地域整備法에 의한 경우 지사허가로 하도록 함(행정사무에 관한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 정리 및 합리화에 관한 법률 제79호).

※일본의 경우 국가 사무의 지방 위임 과정에서 반드시 “행정사무에 관한 국가와 지방간의 관계 정리 및 합리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루어지며, 개별 법(예컨대 농지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하는 한국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음. 법정수탁사무 도입도 지방자치법에 사무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농지법에 반영하고 있음.

- 1998년 농림수산성 대신의 권한의 일부 위임 및 농지전용허가기준이 법정화됨. 2~4ha의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지사허가로 하되(지역정비법에 의한 농지전용에 관해서는 4ha를 초과해도 지사 허가), 당분간 농림수산성 대신과 협의 하도록 함.

※ 2~4ha의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지사허가로 한 것은 1996년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제1차 권고, 1997년 규제완화추진계획(각의결정) 등을 반영한 것임.

※ 1998년 큰 변화는 농지전용허가기준을 행정사무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법정화한 점임.

- 2001년 2ha이하의 농지전용 허가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함. 도도부현이 행하던 2ha이하의 농지전용허가사무에 관해서는 지사사무(자치사무, 지방자치법 제2조 제8항)로 하고, 시정촌이 행하는 2ha 이하의 시가화구역내 농지전용신고사무에 관해서는 제2호 법정수탁사무(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2호)로 함.

※ 2001년 2ha이하의 농지전용 허가사무 등을 자치사무화한 것은 1996년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제1차 권고, 1998년 지방분권추진계획(각의 결정)등을 반영한 것임(별첨 2 참조).

- 일본 농지법체계하에서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도도부현지사와 농림수산대신이며, 시정촌장은 아님.
 - 4ha이하의 농지전용 : 도도부현지사 (2ha 이하는 자치사무, 2~4ha는 법정수탁사무로 구분)
 - 4ha 이상 농지전용 : 농림수산대신
 - 시가화구역내에서는 농업위원회에 신고로 전용 가능
 - 한국의 경우 농지전용허가 사무를 시장·군수가 담당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농지전용허가 사무는 도도부현지사의 사무로 하고 있으며, 시정촌에게는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기관위임되어 있지 않음.
 - 시정촌은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수립, 농용지구역 설정·조정 등에 참여

-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자치사무의 핵심 단위인 도도부현(지사)의 입장은 이중적인 모습임.
 - 정치적 선출직인 지사는 법정수탁사무인 2~4ha의 농지전용시 농림수산대신(국가)에 대한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4ha이상 농지전용 권한도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편,
 - 실무자들은 농지전용 업무의 지방이양 확대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인식이 강함. 농지전용 사무의 지방 권한 위임 확대는 농용지 목표면적 확보 계획 달성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이해함.

- 법정수탁사무의 도입으로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특히 도도부현)가 주체성을 지니고 농지전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전히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기에 지방자치단체(특히 도도부현) 관점에서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함.
 - 다만 농림수산성은 과거에 비해 협의 대상 농지전용 업무 건에 대해 대부분 수용(인정)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지사들은 재정 문제에 관심이 높아 개발 욕구가 강하며, 비농업적 개발을 통해 재정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사 선거에서 논란이 되는 상황임.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난개발(과다 전용) 문제가 제기되어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장이 2008년 11월 28일 각 지방자치단체(특히 도도부현)에 대한 권고안(농지전용허가사무의 적정화 및 위반전용 시정 등에 관한 조치 강화에 관하

여)을 보내기도 함(별첨 3 참조).

○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절차 및 사무 구분

① 농업위원회(시정촌)에의 신고(시가화구역내 농지의 전용)

- 제2호법정수탁사무(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2호)
- 농지전용 신청자가 농업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업위원회가 직접 신청자에게 농지전용 수리 통지를 함.

② 지사의 허가(4ha 이하 및 지역정비법이 정한 바에 따른 전용)

- 2ha 이하의 농지전용허가사무는 자치사무(지방자치법 제2조 제8항)
- 2ha 초과 4ha이하의 농지전용 허가사무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
- 신청자가 농업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업위원회에서 의견을 첨부하여 지사에게 송부하여 지사는 현농업회의의 의견을 청취하여 신청자에게 허가 통지를 함(지사가 2ha~4ha의 경우 농림수산대신에게 협의 절차를 거침).

③ 농림수산대신(지방농정국장등)의 허가(①, ② 이외의 4ha 초과 농지 전용)

- 4ha 초과 농지전용 허가사무
- 신청자가 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수산대신에게 송부하여 농림수산대신이 신청자에게 허가 통지를 함.

○ 농업진흥지역제도와 관련해서는

- 국가는 농용지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지침(면적 목표 등)을 제시하고,
- 도도부현은 농업진흥지역정비기본방침(면적 목표 등)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변경 업무를 담당하고,
- 시정촌은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농용지이용계획(농용지구역의 설정과 변경), 농업진흥의 마스터플랜 수립 업무를 담당함.

○ 농업진흥지역은 도도부현이 농업진흥을 위해 지정한 지역을 의미하며, 농용지구역은 시정촌이 매 10년을 통하여 농용지로서 이용할 토지로 설정된 구역(농지전용 금지)을 의미함.

○ 농용지 구역 설정 요건

- 집단적 농용지(20ha 이상)(2010년 6월부터 10ha 이상)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대상지
- 농도, 용배수로등의 토지개량시설용지
- 농업용시설용지(2ha 이상 또는 집단적 농용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대상지에 인접한 것)
- 기타 농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 일본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제도 운용 원칙

- 입지기준 : 농업생산에 지장이 적은 농지부터 순차적으로 전용하도록 유도함.
- 일반기준 : 다음의 경우 전용 불허 : ① 전용목적 실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타법령의 인허가의 대상이 아닌 경우, 관계 권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등), ② 주변농지에의 피해방제 조치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 ③ 일시전용의 경우에 농지에의 원상회복이 확실하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일본 농지법상 농지구분과 농지전용 허가 방침

- 농용지 구역 : 원칙적 농지전용 불허
- 갑종농지(시가화조정구역내의 농업공공투자후 8년 이내 농지, 집단농지로 고성능 농업기계로 영농 가능한 농지) : 원칙적 불허, 예외 허가(농업용시설, 농산물가공·판매시설, 토지수용사업의 인정을 받은 시설, 집락 접속 주택 등, 지역의 농업 진흥에 관한 지방공공단체의 계획에 의한 시설 등 예외 인정)
- 제1종농지(10ha 이상 집단 농지, 농업공공투자 대상 농지, 생산력이 높은 농지 등) : 원칙 불허, 예외 허가
- 제2종농지(농업공공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소집단의 생산력이 낮은 농지, 시가지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농지 등) : 제3종농지에 입지곤란한 경우 허가
- 제3종농지(도시적 정비가 된 구역내의 농지, 시가지에 있는 농지 등) : 원칙 허가

○ 국가(농림수산성)의 “농용지 등의 확보 등에 관한 기본 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농용지 확보 면적이 현재 407만ha에서 415만ha로 증대되어 8만ha의 추가적인 농용지 지정이 이루어져야 함.

- 이에 따라 농지전용에 대한 자치사무화, 법정수탁사무 도입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농지전용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 농지전용 사무와 농업진흥지역 관리 사무는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

며, 국가의 농용지 추가 확대 의지에 따라 국가(농림수산대신)의 협의 권한을 통하여 도도부현(지사)의 농지전용 권한은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로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표 면적 개념을 국가가 엄격히 적용하여 자치사무로 보기가 힘든 실정임.
 - 도도부현은 농업진흥지역정비기본방침(면적 목표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목표면적 설정이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상황이라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사무적 성격이 매우 강함.
- 농업 업무의 특성, 농지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의 역할에 대한 인식
 - 농지업무의 특성은 농지가 농업생산의 기반임과 동시에 지역에서 중요한 자원이란 점에 기초하여 농업이용을 촉진함과 함께 비농업적 토지이용에의 전환 요청에도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이중성이 있다는 점임. 비농업적 토지이용에 관해서는 시가지에 근접한 구역에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 농지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농지행정을 전국적으로 일정한 기준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 해석과 허가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봄.
 - 농지관리에 대한 지방(도도부현)의 역할은 국가 제시한 기준을 지킴과 함께 지방(도도부현) 내의 상황에 맞춰 실제 허가 사무를 수행하고 적정한 농지관리를 수행하는 것임.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지방(도도부현)은 구체적으로 중요한 자원인 농지에 관한 권리이동과 전용신청에 관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 및 시정촌농업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해당 농지의 입지와 성질, 신청목적 내용의 타당성, 실현성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요컨대 농지업무는 일반 도시건설계획 관리 등과 달리 국가 위임 사무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나. 농업용수 및 농업수리시설 관리 관련 기관 조사

※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공동 조사를 실시한 박석두 연구위원의 “농촌용수관리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관련 해외조사출장(2010. 7. 5 ~ 7. 9) 결과 보고 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여기에서는 수리권 위주로 개략적인 내용만을 제시함.

- 일본의 수리질서는 에도시대(江戸時代)까지는 농업 중심으로 형성되다가,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진전으로 발전용수, 도시용수, 농업용수 수요의 증대로 인해 농업수리권의 보호, 신규 이수의 원활한 권리 설정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수리권을 제도화함.

- 메이지(明治) 29년(1896년) 이수 사용을 허가제로 한다는 제도를 창설함으로써 마련됨(이수량을 특정하지는 않음).
- 쇼와(昭和) 39년(1964년) 신하천법 시행으로 구하천법의 관행수리권을 그대로 인정함(이수량을 정확히 제시하기로 함)(허가수리권과 관행수리권 공존)

○ 수리권 체계가 하천법을 중심으로 하는 허가수리권 체계로 통합 관리됨.

- 한국에서는 하천법에 관행수리권에 대한 규정이 없이 민법에서 관행수리권이 명시되어 있어 관행수리권의 지위의 모호성 등의 문제가 있는데 반해, 일본에서는 하천법에서 관행수리권, 기득수리권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관행수리권에 대한 논란이 없음.
- 관행수리권에 대해서는 사용량이 확인될 경우 신청만 하면 허가하여 거의 논란의 없음.
- 현실적으로 아직 많은 농업인이 관행수리권을 허가수리권으로 전환하지 않고 관습적으로 용수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임. 즉 우리나라와 같이 관행수리권이 인정되어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화되지 않았음.
- 군마현의 경우, 2008년 현재 농업용수 수리권의 허가실태 조사 자료에 의하면, 허가수리권 66.3%, 허가수리권 제출 중 2.0%, 관행수리권으로 미제출 24.6%, 기타(소규모 시설 등) 7.1%로 나타남. 즉 일본은 허가 수리권 체계 정비 역사가 매우 길지만, 아직 농업용수 이용의 2/3 수준만이 허가수리권 체계로 편입되어 있음.

○ 수리권 신청은 개인, 토지개량구, 현, 국가(토지정비사업 추진시) 등 다양한데, 신청자에게 수리권이 귀속됨.

- 농업용수와 관련해서는 토지개량구가 형식적 수리권자(수리권 신청 대리인)이며, 실질적 수리권자는 농업인(농업용수이용자)로 인식됨.
- 대부분의 농업용수는 토지개량구가 농업인을 대표하여 수리권 신청절차를 담당함.
- 토지개량구가 법률적, 형식적 수리권 소유자이지만, 실질적 농업용수 수리권 소유자는 농업인임.

- 한국은 저수지 중심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나 일본은 하천 취수 비율이 높아 하천 중심으로 수리권이 잘 정립되어 있어 허가수리권 체계가 한국에 비해 잘 정비됨.
 - 철저한 신청주의에 의해 수리권이 허가되고 있으며, 신청자는 토지개량구, 개인 등 다양하지만, 농업용수 사용자의 상당부분이 아직까지 수리권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
 - 허가수리권과 관행수리권의 공존에 따른 문제가 한국에서와 유사하게 존재하는데, 새로운 수로 개선 등 개보수사업의 추진, 농업용수의 다 용도 전환을 위한 시설투자사업 등과 더불어 허가수리권체제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군마용수토지개량구, 수자원기구군마용수사업소 등 사례).

- 수리권 허가는 공공 목적으로 한정하여 이윤 목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토지개량구의 목적외 용수 공급은 불가능하여 목적외 용수 공급이 허용되어 있는 한국과 차이가 있음.
 - 일본에서는 목적외 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수리권 허가가 필요함.
 - 용수의 다용도 이용은 법률 위반이며, 환경용수 등은 새로이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함.
 - 새로운 용수 공급시 건설비 회수(비용 부담), 유지관리비 부담 등이 동시에 이루어짐. 예컨대 농업용수 공급 여력이 생겨 생활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경우 생활용수 공급에 해당되는 만큼 초기 투자비용의 일정 부분에 해당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비율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됨.

- 공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농지 감소 등에 따른 농업용수 잉여분 전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자 1972년 건설성 하천국장 통달(通達) “농업용수의 전용에 관한 취급에 대하여”가 제시되는 등 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과 수리권의 합리적 배분 및 이에 대한 비용 부담 구조 등이 명확해짐.
 - 농업용수 전용을 위하여 우선 농업용수 수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 분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① 관행수리권의 내용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허가수리권으로 전환하며, ② 실제의 취수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취수량의 측정을 행하게 하며, ③ 필요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등을 제시함.
 - 군마용수토지개량구 사례를 보면, 1970년 처음 농업용수 전용으로 시작하였는데, 1982년 수도용수 공급을 시작하면서 2008년 현재 43%가 수도용수로 공급되고 있으며, 간선수로 관리 등은 수자원기구가 담당하고 있음.

- 물 부족시는 갈수조정협의 절차를 거침.
 - 용수 배분의 우선순위를 명시하는 한국의 하천법(시행령)과 달리 일본의 경우 철저하게 수리권 갈등 조정은 이해당사자간의 협의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 사용조정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간의 결정사항이며,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는 단순히 당사자간의 협의를 위한 지원 업무만 수행함.
 - 농업용수의 경우 대부분 수리공동체(토지개량구 등)의 보호·지원 의식이 강해 철저히 보호되는 경향이 있음.
 - 다만, 갈수기에 관행수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설득하여 허가수리권 체계에 편입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대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의 시기에 토지개량구를 통해 시도함.
- 한국과 달리 지천, 지류의 시설도 허가수리권 체계에 편입되어 있음.
 - 농지 가운데 독립된 저수지 등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하천에 흐르는 물은 누구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국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에 댐 관리 등 시설 관리권과 댐에 저장된 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하천 관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사무로 인식하고, 취수(수리권 허가 신청) 이후의 물관리에 대해서는 토지개량구 등 조직 등이 참여함.
 - 한국의 경우 댐사용권이 물권으로 규정되어 댐에 저수된 물을 마치 댐관리자가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 댐관리자는 수자원 개발 및 시설 관리 담당만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지원함.
- 농업용수는 10년간 수리권을 보장하고, 갱신시 필요량을 재조사하는 등의 절차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향후 기후 변화 등 여건 변화와 더불어 갈등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
- 농업용수 및 농업수리시설 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의 패턴이 신규 개발보다 유지관리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음.
 - 다만, 시설갱신, 시설의 근대화 등을 통해 유지관리비 절감 노력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예컨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수로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용수 사용의 효율성 도모와 유지관리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음.
- 농촌사회의 비농민 비율 증가 등으로 공동체적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정촌의 합병과 더불어 공동체적 수리체계인 토지개량구의 합병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 공동체적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인의 용수 관리 참여가 미흡한 상태이며, 일정한 수당을 받는 반장(지선), 조장(말단수로)에 의해 용수 및 시설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즉 수초제거 등에 대한 농업인의 참여가 주로 반장, 조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 일본도 65~72세의 농업인이 중심으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함.
 - 합병으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토지개량사업의 적극 추진 등의 효과가 나타남.
 - 현실적으로 소규모 토지개량구는 운영이 힘들며, 운영경비 징수 곤란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토지개량구는 공적 조직으로서 비용징수권, 세금 우대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가의 직접적 지원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 받고 있음.
- 시설의 종류별, 지역별 관리방식 다름.
- 농업수리시설의 관리는 토지개량법에 따라 국영, 도도부현영, 단체영으로 건설 주체에 따라 분류함.
 - 국영사업은 기본적으로 시설의 소유주체는 국가 소유 형태(일부는 시정촌 또는 토지개량구 소유)로 하면서 관리주체는 직할 관리, 도도부현 관리, 시정촌(토지개량구) 위탁 관리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함.
 - 도도부현영 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정촌 또는 토지개량구에 대한 관리이관(소유주체 이전)을 추진하며, 일부는 도도부현 직접 소유 및 관리함.
 - 단체영(시정촌 또는 토지개량구 사업)은 직접 소유 및 관리함.
 - 관리주체별 시설수는 토지개량구 66.2%, 시정촌 17.1%, 도도부현 15.0%, 국가 직할 관리 1.2%, 기타 0.6%로 구성됨.
 - 댐, 기간시설, 간선수로, 말단수로 등에 대한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 토지개량구, 농업인 등의 역할이 다르게 설정됨.
 - 예컨대, 군마용수조합의 경우 간선수로 관리는 수자원기구가 담당하고, 그 외

지선, 지거 관리는 토지개량구가 관리하는 등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짐.

- 유지관리 비용 부담은 실제, 국가 30%, 현 30%, 토지개량구 40%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토지개량구 부담 40%도 30%는 시정촌 부담이라 농업인은 실제 10%의 비용을 분담하고 있는 실정임.
 - 토지개량구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은 제도적으로 곤란하여 시설관리, 시설공사 등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음.
 - 대부분의 토지개량구 이사 구성에 시정촌장이 참여하거나, 관리구장을 시정촌장이 겸직하는 등 시정촌이 토지개량구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다면적 기능이 강조되면서 도도부현 차원에서 다면적 기능 명목으로 토지개량구에 대해 지원, 예컨대 시설보전 대책, GIS 구축, 토지개량구 재정 안정화, 관리인들의 전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한편 현실적으로 일부 고령자, 수익없는 사람, 비사용자, 연금생활자, 파산자, 불만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토지개량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발생
- 토지개량구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GIS 구축, 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현재 일본의 농업수리시설의 경우 대부분 50여년이 경과되어 갱신시기에 다달라 다양한 수리시설스톡메니지먼트사업이 적극 추진됨.
 - 시설이 고장난 후 새로이 공사하기보다 고장 전에 미리 손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인식이 강함.
 - 농업 수리시설의 안전 진단, 보강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예컨대 군마현의 경우 농업수리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적 관리 차원에 기간수리시설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공적 지원 차원에서 국영조성시설관리체제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시설의 활용 차원에서 기간수리시설스톡메니지먼트사업, 지역농업수리시설스톡메니지먼트사업, 물·땅(水·土)보전강화대책사업, 유지관리적정화사업 등을 추진함.
- 토지개량구가 공적 조직이지만, 정부조직이 아닌 민간 조직이라 정부 차원에서 토지개량구 통합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개별적 토지개량구의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해 토지개량구 스스로 통합 필요성

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 물관리공사 등으로 재편 논의는 일부 학자에 의해 주장되는 것이 불과하며, 정부 차원에서 관심이 거의 없는 상태임.
- 일본에서도 과거 수리권 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수리시설의 정비
를 통해 충분한 용수 공급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수리권 갈등이 해소되어 옴.
- 오래전부터 수리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古田優先” 원칙이 적용됨. 비록 상
류부에 조성된 신전(新田)이라도 “古田優先” 원칙에 따라 하류부의 舊田에 우
선하여 용수 공급이 될 수 없도록 함.
- 갈등 조정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간의 사용량 조정을 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
지지만, 현실적으로 용도별 비슷한 비율로 취수 제한을 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
하고 있음.

<별첨 1> 농지법 63조 내용(법정수탁사무 내용)

■ 제1호 법정수탁사무 (농지법 제63조 제1호)

제63조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 가운데, 다음 각 호 및 차 항 각 호에 언급한 것 이외의 것은, 지방자치법 제 2 조 제 9항 제 1호에 규정한 제1호 법정수탁사무라고 한다.

※ 차 항 각 호(제63조 2항 각호)에 언급한 것은 제2호법정수탁사무로 함.

1 제 3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다)

※ 제3조 내용 :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권리이동의 제한

→ 제3조 제4항 : 농업위원회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허가를 하려고 할 때는, 미리 그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가 존재한 시정촌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 해당 통지를 받은 시정촌장은, 시정촌의 구역에 있어서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가 농업상 적정하면서 종합적인 이용을 확보한 견지로부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견을 말할 수 있다.

2 제4조 제1항, 제3항(동조 제 6항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동일한 사업의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 2헥타르를 초과한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하는 행위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

※ 제4조 내용 : 농지 전용의 제한

→ 제4조 제1항 :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하는 자는, 정령(政令)으로 정한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그 자가 동일한 사업의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 4헥타르를 초과한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하는 경우<농촌지역공업 등 도입촉진법(昭和 46년 법률 제 112호), 그 밖의 지역의 개발 또는 정비에 관한 법률로 정령으로 정한 것 [이하 「지역정비법」이라고 한다] 이 정하는 대로 따르고,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하는 경우에 정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5항에 있어 동일>에는,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다.

1 다음 조 제 1 항의 허가에 관계된 농지를 그 허가에 관계된 목적에 제공한 경우

2 국가(國) 또는 도도부현이 도로, 농업용 용배수시설, 그 밖의 지역진흥상 또는 농업 진흥상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된 시설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용도에 제공하기 위해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한 경우

3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제 19조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농업용지 이용집적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되거나, 이전된 동법 제4조제4항 제 1 호의 권리에 관계된 농지를 해당 농업용지 이용 집적계획에 정한 이용 목적에 제공한 경우

4 특정 농산촌 지역에 있어서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던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이 정하는 바

에 의해 설정되거나, 이전된 동법 제2조 제3항 제3호의 권리에 관계된 농지를 해당 소유권이전 등 촉진 계획에 정한 이용 목적에 제공한 경우

5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주 등 및 지역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던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되거나, 이전된 동법 제5조 제7항의 권리에 관계된 농지를 해당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에 정한 이용 목적에 제공한 경우

6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사용한 농지를 그 수용 또는 사용에 관계된 목적에 제공한 경우

(제7호는 제2호 법정수탁사무에 해당)

8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경우

→ 제4조 제3항 : 도도부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도부현 농업회의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된다.

→ 제4조 제5항 : 국가(國) 또는 도도부현이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국가(國) 또는 도도부현과 도도부현지사와의 협의 (그 자가 동일한 사업의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 4헥타르를 초과한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가 성립한 것으로써 동항의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 제6항 : 제3항의 규정은 도도부현지사가 전항의 협의를 성립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3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 및 동조 제3항 및 제5항에 있어 준용한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동일한 사업의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 2헥타를 초과한 농지 또는 그 농지와 아울러 채초 방목지에 대해서 제3조 제1항 본문에 언급한 권리를 취득한 행위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

※ 제5조 내용 :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전용을 위한 권리이동의 제한

→ 제5조 제1항 :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하기 위해 또는 채초 방목지를 채초 방목지 이외의 것(농지를 제외한다. 차항 및 제4항에 있어 동일)으로 하기 위해, 이러한 토지에 관하여 제3조 제1항 본문에 언급한 권리를 설정하고,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도도부현지사의 허가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동일한 사업의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 4헥타를 초과한 농지 또는 그 농지와 아울러 채초방목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지역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서 정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한 것을 제외한다. 제4항에 있어 동일] 에는, 농림수산대신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 국가(國) 또는 도도부현이, 전 조 제1항 제2호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시설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2 농지 또는 채초 방목지를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던 농업용지이용집적계획에 정한 이용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 해당 농업용지이용집적계

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동법 제4조 제4항 제1호의 권리가 설정되거나 이전된 경우

3 농지 또는 채초 방목지를 특정 농산촌지역에 있어서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던 소유권이전 등 촉진 계획에 정한 이용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 해당 소유권이전 등 촉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2조 제3항 제3호의 권리가 설정되거나 이전된 경우

4 농지 또는 채초 방목지를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주등 및 지역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던 소유권이전 등 촉진 계획에 정한 이용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 해당 소유권이전 등 촉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5조 제7항의 권리가 설정되거나 이전된 경우

5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농지 또는 채초 방목지, 또는 이것들에 관계한 권리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6호는 제2호 법정수탁사무에 해당)

7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경우

→ 제5조 제4항 : 국가(國) 또는 도도부현이,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하기 위해 또는 채초방목지를 채초방목지 이외의 것으로 하기 위해, 이러한 토지에 관하여 제3조 제1항 본문에 언급한 권리를 취득하려고 할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국가(國) 또는 도도부현과 도도부현지사와의 협의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동일한 사업의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 4헥타를 초과한 농지 또는 그 농지와 아울러 채초 방목지에 대해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과의 협의)가 성립한 것으로써 제1항의 허가가 있던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조 제3항 : 제3조 제5항 및 제7항 및 전 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5조 제5항 : 전 조 제3항의 규정은, 도도부현지사가 전 항의 협의를 성립시키려 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제3조 제1항 :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또는 지상권, 영소작권, 질권,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임차권 또는 그 밖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가 농업위원회의 허가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자(정령으로 정한 자를 제외한다)가 그 주소가 있는 시정촌의 구역의 밖에 있는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 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경우에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제46조 제1항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지사가 작성한 조정안의 수락에 수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거나 이전된 경우

3 제37조에서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37조에 규정하는 특정 이용권이 설정된 경우

4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에 규정한 유휴 농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설정

된 경우

5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국가(國) 또는 도도부현인 경우

6 토지개량법 (昭和 24년 법률 제195호),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 (昭和 44년 법률 제58호), 취락지역정비법 (昭和 62년 법률 제63호) 또는 시민농원정비촉진법 (平成 2년 법률 제44호) 에 의한 교환 분합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설정되거나 이전된 경우

7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던 농업용지이용집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4조제4항 제1호의 권리가 설정되거나 이전된 경우

8 특정 농산촌지역에 있어서 농림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平成 5년 법률 제72호)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던 소유권이전등 촉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2조 제3항 제3호의 권리가 설정되거나 이전된 경우

9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주등 및 지역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平成 19년 법률 제48호)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던 소유권이전등 촉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5조 제7항의 권리가 설정되거나 이전된 경우

10 민사조정법 (昭和 26년 법률 제222호) 에 의한 농사조정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설정되거나 이전된 경우

11 토지수용법 (昭和 26년 법률 제219호),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농지 또는 채초 방목지, 또는 이것들에 관계한 권리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12 유산의 분할, 민법 (1896년 법률 제89호) 제768조 제2항(동법 제749조 및 제771조에 있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분여에 관한 재판 또는 조정, 또는 동법 제95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상속 재산의 분여에 관한 재판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설정되거나 이전된 경우

13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한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하「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라고 한다) 또는 동법 제11조의 12에 규정한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 (이하「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라고 한다)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미리 농업위원회에 신고하고, 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농지매매 등 사업 (이하「농지매매 등 사업」이라고 한다)의 실시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14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 제3항의 신탁 인수 사업 또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제4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언급한 사업 (이하 이것들을 「신탁 사업」이라고 한다)을 행하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지 보유 합리화 법인이, 신탁 사업에 의한 신탁의 인수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및 해당 신탁의 종료에 의하여 그 위탁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5 지방자치법 (昭和 22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 도시 (이하「지정 도시」라고 한다.) 가 고도(古都)에 있어서 역사적 풍토의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 (昭和 41년 법률 제1호)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준하는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6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경우

4 제30조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1항, 제34조 및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

※ 제30조의 내용 : 이용상황조사 및 지도

- ※ 제31조의 내용 : 농업위원회에 대한 신청
- ※ 제32조의 내용 : 유휴농지임을 알리는 통지
- ※ 제33조의 내용 : 유휴농지의 농업상의 이용에 관한 계획의 신고
- ※ 제34조의 내용 : 권고
- ※ 제35조의 내용 : 소유권 이전 등의 협의

→ 제30조 제1항 : 농업위원회는 매년 1회, 그 구역 내에 있는 농지의 이용 상황에 관한 조사 (이하 「이용상황 조사」라고 한다)를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 제30조 제2항 : 농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라도 이용 상황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30조 제3항 : 농업위원회는 전 2항의 규정에 따름 이용상황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농지가 있을 때는, 그 농지의 소유자 (그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원에 근거하여 사용 및 수익을 본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 및 그 농지의 소유자. 제32조에 있어 동일)에 대하여 해당 농지의 농업상의 이용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지도를 한다.

1 실제로 경작의 목적에 제공되고 있지 않고, 또한 계속해서 경작의 목적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예상된 농지

2 그 농업상의 이용 정도가 그 주변의 지역에 있어서 농지의 이용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다고 인정된 농지 (전 호에 언급한 농지를 제외한다.)

→ 제31조 : 다음에 언급한 자는 전 조 제 3 항 각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농지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농업위원회에 신청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그 농지가 존재하는 시정촌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농업협동조합, 토지개량구, 그 밖의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농업자가 조직한 단체

2 그 농지의 주변 지역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 (그 농지에 의해 그 자의 영농조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것에 한한다.)

2 농업위원회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농지에 관한 이용 상황 조사,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 제32조 : 농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농지가 유휴 농지인 취지 및 해당 농지가 제 3 0 조 제 3 항 각호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별도의 통지를 한다. 다만, 사실이 없고 통지를 받아야 할 유휴 농지의 소유자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1 제 3 0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 기간 해당 지도에 관계된 농지의 농업상의 이용 증진이 도모되지 않는 경우

2 제 3 0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에 관계된 농지에 대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점을 이유로, 그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도에 따를 의사가 없는 취지를 표명했을 때, 그 밖에 그 농지의 농업상의 이용 증진이 도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된 경우

3 그 농지에 관하여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

→ 제33조 제1항 : 전 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유휴 농지의 소유자 (해당 유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원에 근거하여 사용 및 수익을 본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 이하 「소유자등」이라고 한다)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통지가 있던 날로부터 기산하여 6 주 이내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통지에 관계된 유휴 농지의 농업상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농업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 제34조 : 농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휴 농지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한을 정하고, 해당 유휴 농지의 농업상의 이용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1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계된 계획의 내용이 해당 유휴 농지의 농업상의 이용 증진을 도모한 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2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

3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계된 계획에 따라 해당 유휴 농지의 농업상의 이용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제2항 농업위원회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권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권고에 근거하여 강구한 조치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5조 제1항 : 농업위원회는 제3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에 관하여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에 있어, 해당 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에 따르지 않을 때는 해당 권고에 관계된 유휴 농지의 소유권의 이전 또는 임차권의 설정, 또는 이전 (이하 「소유권의 이전 등」이라고 한다.) 을 희망한 농지보유합리화법인,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 또는 특정 농업 법인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제23조 제4항에 규정한 특정 농업 법인을 말한다) 으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 (이하 「농지보유합리화법인등」이라고 한다) 가운데 소유권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를 행한 자를 지정하고, 그 자가 소유권의 이전 등에 관한 협의를 행한 취지를 해당 권고를 받았던 유휴 농지의 소유자등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5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

※ 제44조의 내용 : 조치명령

→ 제44조 : 시정촌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에 관계된 유휴 농지에 있어서 병해충의 발생, 토석, 그 밖에 이것과 유사한 것이지만 퇴적,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한 사유에 의해 해당 유휴 농지의 주변 지역에 있어서 영농 조건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유휴 농지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고, 그 지장의 제거 또는 발생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이하 이 조에 있어 「지장의 제거등의 조치」라고 한다.) 를 강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 2 항 전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할 때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교부해야 하다.

제 3 항 시정촌장은 제 1 항에 규정한 경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스스로 그 지장의 제거 등의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제 2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해당 지장의 제거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해당 지장의 제거등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해당 지장의 제거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해당 조치에 필요로 한 비용을 징수한다는 취지를 미리 공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지장의 제거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령받은 유희 농지의 소유자 등이, 해당 명령에 관계된 기한까지 해당 명령에 관계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강구해도 충분하지 않거나 강구할 전망(기미)이 없을 때.

2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지장의 제거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령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 과실이 없고 해당 지장의 제거등의 조치를 명해야 하는 유희 농지의 소유자 등을 확실히 알 수 없을 경우.

3 긴급하게 지장의 제거 등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지장의 제거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령할 시간이 없는 경우.

제 4 항 시정촌장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의 지장의 제거 등의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구할 때는, 해당 지장의 제거 등의 조치에 필요로 한 비용에 관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유희 농지의 소유자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5 항 전항의 규정에 의하고 부담시키는 비용의 징수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 (昭和 23 年 법률 제 43 号) 제 5 조 및 제 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49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제2호, 제3호 및 다음 호에 언급한 사무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 제49조의 내용 : 입회조사

※ 제50조의 내용 : 보고의 징구

→ 제49조 제1항 :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이 법률에 의한 매수, 그 밖의 처분을 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그 직원에게 타인의 토지 또는 공작물에 들어가 조사 측량시키고, 또는 조사나 측량의 장애가 되는 죽목(竹木), 그 밖의 물건을 제거시키거나 이전시키도록 할 수 있다.

→ 제49조 제3항 : 제 1 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르고, 미리 그 토지 또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이것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로서 통지에 대신할 수 있다.

→ 제49조 제5항 : 국가(國) 또는 도도부현은, 제 1 항의 토지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측량 또는 물건의 제거, 또는 이전에 의해 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자에 대해 통상 생기는 손실을 보상한다.

→ 제50조 :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이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토지의 상황 등에 관하여 도도부현 농업회의 또는 농업위원회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징구할 수 있다.

7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제 2호 및 제 3호에 언급한 사무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 제51조의 내용 : 위반전용에 대한 처분

→ 제51조 :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자 (이하 이 조에 있어 「위반전용자등」 이라고 한다) 에 대해 토지의 농업상 이용 확보 및 다른 공익과 관계인의 이익을 형량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필요의 한도에서 제4조 또는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고, 그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조건을 붙이고, 또는 공사 그 밖의 행위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고 원상회복 그 밖에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이하 이 조에 있어 「원상회복등의 조치」 라고 한다) 를 강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제 4조 제1 항 또는 제 5 조 제1 항의 규정에 위반한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
- 2 제 4조 제1 항 또는 제 5 조 제1 항의 허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하고 있는 자
- 3 전 2 호에 언급한 자로부터 해당 위반에 관계된 토지에 관하여 공사 그 밖의 행위를 청부받은 자 또는 그 공사, 그 밖의 행위의 하도급 인
- 4 위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에 의해 제4조 제1 항 또는 제 5 조 제1 항의 허가를 받은 자

제 2 항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때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명령서를 교부해야 하다.

제 3 항 농림수산 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 1 항에 규정한 경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스스로 그 원상회복 등의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제 2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해당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그 기한까지 해당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해당 원상회복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해당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취지를 미리 공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령받은 위반전용자 등이, 해당 명령에 관계된 기한까지 해당 명령에 관계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경우, 강구해도 충분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강구할 전망(기미)이 없는 경우.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령하려는 경우에 있어, 과실이 없고 해당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해야 하는 위반전용자 등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

3 긴급하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강구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할 시간이 없는 경우.

4 농림수산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의 원상회복 등의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구할 때는, 해당 원상회복 등의 조치에 필요로 한 비용에 관하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바에 의해, 해당 위반 전용 자등에 부담시킬 수 있다.

5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시키는 비용의 징수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 제 5 조 및

제 6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

※ 제52조의 내용 : 정보의 제공 등

→ 제52조 : 농업위원회는, 농지의 농업상 이용의 증진 및 농지의 이용 관계의 조정
에바지하기 위해, 농지의 보유 및 이용의 상황, 임대차 등의 동향, 그 밖의 농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 및 제공을 수행한다.

■ 제2호 법정수탁사무 (농지법 제63조 제2호)

제63조 제2항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 가운데, 다음에 언급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2호에 규정한 제 2호 법정수탁 사무라고 한다.

1 제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 (동일한 사업의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 2헥타를 초과한 농지를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한 행위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

※ 제4조의 내용 : 농지전용의 제한

→ 제4조 제1항 제7호 : 시가화 구역 (도시계획법 (昭和 43년 법률 제100호) 제7조 제1항의 시가화 구역이라고 정해진 구역에서,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안에 있는 농지를, 정령(政令)으로 정한 바에 따라 미리 농업위원회에 신고하고 농지 이외의 것으로 한 경우

2 제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시정촌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동일한 사업의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 2헥타를 초과한 농지 또는 그 농지와 아울러 채초방목지에 관하여 제 3조 제 1항 본문에 언급한 권리를 취득한 행위에 관계된 것을 제외한다)

※ 제5조의 내용 :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전용을 위한 권리이동의 제한

※ 제3조의 내용 :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의 권리이동의 제한

→ 제5조 제1항 제6호 : 전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시가화 구역내에 있는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에 대해, 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미리 농업위원회에 신고하고, 농지 및 채초 방목지 이외의 것으로 하기 위해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 제3조 제1항 :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또는 지상권, 영소작권, 질권,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 임차권 또는 그 밖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당사자가 농업위원회의 허가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자(정령으로 정한 자를 제외한다)가 그 주소가 있는 시정촌의 구역 밖에 있는 농지 또는 채초방목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도도부현지사의 허가) 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쪽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한 경우에는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제46조제1항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지사가 작성한 조정안의 수락에 수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또는 임차권이 설정되거나 이전된 경우

3 제37조로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37조에 규정한 특정 이용권이 설정된 경우

4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에 규정한 유휴 농지를 이용하는 권리가 설정

된 경우

5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국가(國) 또는 도도부현인 경우

6 토지개량법 (昭和 24년 법률 제195호), 농업진흥지역의정비에관한법률 (昭和 44년 법률 제58호), 취락지역정비법 (昭和 62년 법률 제63호) 또는 시민농원정비촉진법 (平成 2년 법률 제44호) 에 의한 교환 분합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설정되거나 이전된 경우

7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던 농용지이용집적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4조제4항 제1호의 권리가 설정되거나 이전된 경우

8 특정 농산촌지역에 있어서 농림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平成 5년 법률 제72호)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2조 제3항 제3호의 권리가 설정되거나 이전된 경우

9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정주등 및 지역간 교류의 촉진에 관한 법률” (平成 19년 법률 제48호)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소유권 이전 등 촉진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5조 제7항의 권리가 설정되거나 이전된 경우

10 민사조정법 (昭和 26년 법률 제222호) 에 의한 농사조정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설정되거나 이전된 경우

11 토지수용법 (昭和 26년 법률 제219호)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농지 또는 채초 방목지 또는 이것들에 관계한 권리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경우

12 유산의 분할, 민법 (1896년 법률 제89호) 제768조 제2항(동법 제749조 및 제771조에 있어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재산의 분여에 관한 재판이나 조정, 또는 동법 제95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상속 재산의 분여에 관한 재판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설정되거나 이전된 경우

13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한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하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이라고 한다) 또는 동법 제11조의 12에 규정한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 (이하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 라고 한다)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미리 농업위원회에 신고하고, 동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농지매매등사업 (이하 「농지매매등사업」 이라고 한다)의 실시에 의해 이러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14 농업협동조합법 제10조 제3항의 신탁 인수 사업 또는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 제4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2호의 2에 언급한 사업 (이하 이것들을 「신탁 사업」 이라고 한다)을 행하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지 보유 합리화 법인이 신탁 사업에 의한 신탁의 인수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및 해당 신탁의 종료에 의해 그 위탁자 또는 그 일반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5 지방자치법 (昭和 22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 도시 (이하 단지 「지정 도시」 라고 한다.) 가 고도(古都)에 있어서 역사적 풍토의 보존에 관한 특별조치법 (昭和 41년 법률 제1호)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준하는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6 그 밖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경우

<별첨 2> 지방분권추진계획(1998년)의 주요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한 것을 기본으로 하여 지역행정을 자주적으로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국가는 국가존립에 필요하고 전국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다음 역할을 하도록 한다.

첫째, 국제사회에 있어서 국가로서 존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둘째,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정해야 할 국민의 활동에 관련된 사무와 지방자치에 관하여 기본적인 준칙을 정해야 할 사무.

셋째, 전국적인 규모로서 전국적인 관점에서 시행하여야 할 시책과 사무

2.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와 사무구분의 재구분

첫째, 都道府縣지사와 市町村의 장이 국가기관으로서 국가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국가기관위임사무제도를 폐지한다.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에 따라 주무장관과 都道府縣지사의 지휘감독권, 취소·정지권, 그리고 직무집행명령제도를 폐지한다.

둘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다음의 법정수탁사무로 재구성한다.

■ 국가 통치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무

■ 중요한 부분을 국가가 직접 집행하는 사무로서 다음과 같은 사무

- 국가가 설치한 공공물의 관리 및 국립공원 관리와 관련된 사무
 - 국립공원내의 경미한 행위허가등에 관한 사무
 - 국립공원내의 특별지역·특별보호지구등의 지정에 관한 사무
- 치산·치수 및 천연자원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무
-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가가 설정한 환경의 기준 및 규제기준을 보완하는 사무
 - 환경기준의 유형 지정에 관한 사무
 - 총량규제기준 설정에 관한 사무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교통소음 감시에 관한 사무
- 신용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등의 감독등에 관한 사무
- 의약품 등의 제조 규제에 관한 사무
- 마약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 전국적으로 단일한 제도 또는 일률적 기준에 따라 행하는 급부금 지급등에 관

한 사무

- 생존에 관련된 내셔널 미니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일률적으로 공평·평등하게 실시하는 급부금 지급등에 관한 사무
- 전국 단일 제도로써 국가가 각출하여 운영하는 보험 및 급부금 지급등에 관한 사무
- 국가보상급부등에 관한 사무
- 정신장애인에 대한 입원조치에 관한 사무
- 국가가 행하는 재해구조에 관한 사무
- 국가가 직접 집행하는 사무의 전제가 되는 절차의 일부만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로서 당해사무만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 국가협정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도 전체를 재검토가 예정되어 있는 사무

(별첨 3) 지방자치단체의 난개발(과다개발) 시정을 위한 정부의 권고 공문 사례

2008 농진 제1413호

○○○○현 지사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장

농지전용 허가 사무의 적정화 및 위반전용의 시정 등에 관한 대처 강화에 대하여

지난번, 지방분권에 대한 대응 검토를 기하기 위해, 각 도토후켄의 협력 아래 2헥타 이하의 농지전용 허가 사무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지만, 해당 조사 결과에 있어서 허가에 관한 허가권자의 검토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안 등이 여기저기에 조금씩 보여짐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사무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일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농지의 위반 전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적정한 대응을 부탁해 왔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형국에 최근 국제적인 식료사정의 불안정화 등을 배경으로, 식료 안정공급의 기반인 우량농지 확보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것의 방지·시정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농지전용 허가 사무의 적정화 및 위반 전용의 시정 등에 관한 대처 강화를 위해서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 주길 바란다.

더욱이 이것에 대하여 귀 관하 농업위원회에도 통지하여 주길 바란다.

1. 농지전용 허가 사무의 적정화에 관하여

(1)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법령 적용의 적정화

조사결과에 있어서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법령의 적용 등에 문제가 있는 사례가 여기저기 조금씩 보였다. 이와 같은 사태는 식료의 안정공급의 기반인 우량농지의 확보와 비농업적 이용과의 조정을 도모하여, 농지전용을 농업상의 이용에 지장이 적은 농지로 유도한다는 농지전용 허가 제도의 취지에서 보건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령상의 적용 조건의 확인을 치밀하게 이행하는 등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법령의 적정한 적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더욱이 조사결과에 있어서 특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가) 상당한 정도의 농지의 확산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20헥타 이상 규모의 농지(하나의 단지)」 (제1종 농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의 검토가 충분하게 실시되지 않는다 (농지법 시행령 제1조의 11 제1호, 제1조의 19 제1호).

나) 특정 토지개량 사업 등의 시행 구역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작포기지로 되어 있거나 관리 불충분 등에 따라 수로의 기능이 저하하고 있는 일 등으로 제1종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농지법 시행령 제1조의 11 제2호, 제1조의 19 제2호).

다) 주변에는 농지가 펼쳐져 있고 도로가 그물망 처럼 배치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의 가구(街區)를 형성하고 있는 구역 내에 있다고 하여 제2종 농지로서 판단하고 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 14 제1호)

라) 수관이 매립된 도로에 접하고 있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 취부도로의 농지전용을 포

함하여, 해당 도로의 도로변 구역에 있다고 하여 제3종 농지로 판단하고 있다(농지법 시행 규칙 제5조의 12 제1호).

- 마) 시가지화의 지표로 되어있는 시설로부터의 거리를 바르게 적용하지 않고, (300m와 500m를 바꾸는 등), 제2종 농지 혹은 제3종 농지로 판단하고 있다(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 12 제1호, 제2호, 제5조의 14 제2호).
- 마) 일시 전용인 점을 들어 농지구분의 검토를 시행하지 않는다(농지법 시행령 제1조의 10 제1항 제1호, 제2호).
- 바) 전용허가와 관계한 사업자가 시설의 설치까지를 행하지 않는 전용사업 계획(토지의 조성 등으로 완료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종사자의 취업기회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하여 제1종 농지의 불허가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농지법 시행 규칙 제5조의 2 제2호).
- 사) 신청지가 집락에 위치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제1종 농지의 불허가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농지법 시행 규칙 제5조의 2 제4호).
- 아) 농지구분의 판단 이유 등과 법령 상의 적용조항이 일치하지 않는다.

(2) 농지전용 허가에 관계한 결재문서에 대한 필요서류의 첨부 및 적정한 보관의 철저

조사결과에 있어서 농지전용 허가에 관한 결재문서에, 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검토의 경위와 그 근거가 되는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사례가 조금씩 보였다. 이들 서류는 기안을 담당하는 자가 농지 전용허가 기준을 채우고 있는지 어떤지 등의 확인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결재권자가 허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결재를 행할 때 이들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상황은 심사가 적절하게 시행된 일이 확인불가능하고, 또한 잘못된 허가 기준의 적용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이들 서류는 허가가 적절하게 시행된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여, 행정문서로서 적절하게 보관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들 서류의 결재문서에 대한 첨부 및 적정한 보관에 관해서 철저해야 한다. 더욱이 조사결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첨부가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가) 허가에 상당하다고 판단된 검토의 경위에 관한 자료

심사표 등(농지전용허가 기준의 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의 확인 및 이것에 입각하여 허가권자로서 허가에 상당하다고 판단한 이유 등을 정리한 것. 별지 참고양식 참조)

나) 허가에 상당하다고 판단된 근거 자료

(ㄱ) 농지의 집단성의 유무가 농지구분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신청지 주변 농지의 부존상황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도면 등(제1종 농지: 농지법 시행령 제1조의 11 제1호, 제1조의 19 제1호. 제2종농지: 농지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5조제2항 제2호)

(ㄴ) 공공시설 또는 공익적 시설 등 시가지화의 지표가 되는 시설의 유무가 농지구분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시설의 존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도면 등(제2종 농지: 농지법시행령 제5조의 14 제2호. 제3종 농지: 농지법 시행규칙

제5조의 1 제1호, 제2호)

(ㄷ) 도로 수관, 하수도관 혹은 가스관 매립의 유무가 농지구분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수관 등의 매립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도면 등(제3종 농지: 농지법 시행 규칙 제5조 12 제1호)

2. 위반전용의 시정 등에 관한 대책의 강화

(1) 위반 전용의 방지 및 엄정한 대응

위반 전용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도 「농지전용 허가 및 위반 전용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관해서」(1988년 6월17일 63구개 B 제574호 구조개선국장 통지) 및 「위반전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관해서」(2005년9월1일 농진 제940호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장 통지)를 보여주는 등 엄정한 대응을 부탁하여 왔지만, 아직 충분한 성과가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번 위반 전용에 대한 대응이 불충하는 등의 보도가 된 참에, 농지법 준수에 있어 한층 대처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아래에 나와 있듯이 위반 전용의 방지 및 위반 전용에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함과 동시에 귀 관하 농업위원회에 대하여 협력을 구하고 싶다.

가) 위반적용 방지 및 조기 발견·시정을 위한 대책

(ㄱ) 토도부켄의 대책

① 위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에 대한 계발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점에서, 스스로 계발활동에 대처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에 보다 가까이 있는 농업위원회에 있어서, (나)에 따른 계발활동이 활발하게 실시되도록 조언지도를 실시하는 일

②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조기에 발견하여 시정지도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농업위원회가 위반 전용을 파악한 경우에 이에 따른 보고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보다 농업위원회와의 정보연락체제를 긴밀하게 함과 동시에, 농업위원회에 있어서 (나)에 의해 정보수집체제가 정비되도록 조언 지도를 행하는 일.

③ 산업폐기물 등의 투기에 따른 위반 전용에 대해서는 토도부켄의 환경담당부국과 지원경찰과의 정보연락 체제를 긴밀하게 하여, 이들의 기관과의 연계에 따라 위반 전용의 조기발견·조기시정에 힘쓰는 일.

(ㄴ) 농업위원회의 대책

① 농업위원회는 위반 전용의 방지를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계발을 도모하기 위해, 시·촌·무라 장의 출입구 등에 농지전용 허가 제도에 관한 포스터의 게시, 혹은 리프렛의 준비, 나아가서 시·촌·무라의 홍보지 등에 있어서의 제도의 소개 게재 등 대처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일.

② 농업위원회는 위반 전용을 파악한 경우에 있어서는 「농지 등 전용 관계사무처리 요령의 제정에 관하여」(1971년 4월 26일 46농지 B 제500호 농림성 농지국장 통지. 이하 「사무처리요령」이라고 한다.)의 제3의 1의 (1)에 기초하여, 그 사정을 조사하여 토도부켄 지사에 보고하는 일로 되어있지만, 농업위원회에 따른 농지감시활동만으로는 소관 내의 모든 농지의 관계기관의 협력을 얻어, 효율적인 위반 전용 정보의 수집체

제의 정비에 힘쓰는 일.

나) 위반 전용된 농지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의 엄격한 적용

ㄱ) 농지법 제83조 2의 규정에 있어서는 「토지의 농업상의 이용 확보 및 기타 공익 등에 관계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무엇보다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위반전용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행하는 일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반 전용을 파악한 경우에는 우량 농지의 확보 시점으로부터, 원상 회복을 요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행하는 일. 더욱이 위반 전용에 관계한 농지에 관해서, 가령 허가신청이 실시되면 허가 가능할 것 같은 경우에도 그의 취급은 동일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검토를 행할 필요가 있는 점에 변함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는 일

ㄴ) 원상회복 명령을 행한 경우에 있어서,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에 기반하는 대집행 등에 따라 원상회복을 행함과 동시에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는 일.

다) 농업위원회에 따른 위반 전용의 방지 등

본래, 위반 전용의 시정 지도를 행하는 입장에 있는 농업위원회 스스로 위반 전용을 행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은 농지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할 원인이 되어 심히 유감이다.

토도부켄의 농지 전용 담당부국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위원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만약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한 대처를 기하기 위해, 신속히 토도부켄의 농지 전용 담당부국에 보고하도록 농업위원회에 통지하는 일.

(2) 위반 전용과 더불어 유해물질에 따른 주변농지의 오염방지 등

위반 전용의 결과, 산업폐기물 등이 농지에 투기된 사안에 있어서는 당해산업폐기물 등으로부터 유해물질이 유출하여 주변농지를 오염시켜, 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축산물이 생산되는 일이 걱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반 전용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국민의 음식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 등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엄정한 대응을 요구함과 동시에 귀 관하 농업위원회에 대하여 협력을 구하고 싶다.

가) 토도부켄의 대처

산업폐기물 등의 투기에 따른 위반전용은 토지의 농업상의 이용 확보 및 기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위반 전용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일.

또한 유해물질에 따른 주변농지에서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서의 경작 여부에 대해서, 토도부켄의 농업시험연구기관 혹은 보급조직 등에 영농상의 조치에 대하여 검토의 요청을 행하는 일.

나) 농업위원회의 대처

농업위원회가 농업폐기물 등의 투기의 기미가 보이는 위반 전용을 발견하고, 사무처리요령에 기초하여 토도부켄 지사에게 보고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촌·무라의 환경

담당부국 등과 연계하여 유해물질의 주변 농지제로의 유출 상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사무처리 요령 양식 제12호 「위반전용사무보고」의 「부근의 농림수산업 또는 생활 환경에 대한 피해 상황」란에 기입하여 신속히 보고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